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7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 한정애·장철민·서영교

허 영·조인철·김준형

조정식 • 이학영 • 이병진

진선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금융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할 것임.

금융기관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 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그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 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임.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의 금융기관들이 금융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금

융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세계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3 신설).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4항 중 "고려할 수 있다"를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2조의3(기금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제10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경우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에서 발생하는 온실 가스 배출량(이하 "기금운용배출량"이라 한다)이 장기적으로 영(零) 이 되는 것을 목표로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 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정하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기금운용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의 설정 및 이행현황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제2항제2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102조의3에 따른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운용배출량 연도별 감축 목표 보고 시기에 관한 특례) 보건 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02조의3의 개정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를 국회 소관 상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 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 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 를 고려할 수 있다. 고려하여야 한다. ⑤ • ⑥ (생략) (5)·(6) (현행과 같음) 제102조의3(기금 온실가스 목표 <신 설> 관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탄 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 을 위하여 제102조제2항제3호 에 따라 기금을 관리 · 운용하 는 경우 증권의 매매 및 대여 대상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하 "기금운용배출량" 이라 한다)이 장기적으로 영 (零)이 되는 것을 목표로 기금 을 관리 · 운용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 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 략)

- ② 전문위원회는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검토・심 의한다.
- 1. (생 략)
- 2.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다음

감축	목표	를 제	103	조에	따	른
국민	연금기	금운용	위육	원회의		심
의를	거쳐	설정히	고	이를	지	체
없이	국회	소관	상	임위원	회	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배출량의 연도별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기금운용배출량의 산정기준 및 방법, 기금운용배출량의 연 도별 감축 목표의 설정 및 이 행현황의 점검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의3(국민연금기금운용전 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2)			 . — — — -	_
			 	_
			 	_
1 /	(처체기	フト (ウ)		

- 1. (연맹과 崔吉)

각 목의 사항 가. ~ 다. (생 략) <u><신 설></u>

<u>라.</u> (생 략) 3. (생 략) ③·④ (생 략) _____

<u>마.</u> (현행 라목과 같음)

- 3. (현행과 같음)
- ③ ④ (현행과 같음)